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2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고요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3. 5. 23.

판결 선고 2023. 6.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22. 7. 30.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2. 9. 23. 접수 제27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2. 3. 3.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22차전17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C는 원고에게 2,031,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2. 5.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의 정본이 2022. 3. 11. C에게 도달하였으나,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2. 3. 26.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1) C의 부(父)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B, 자녀들인 E, F, C가 있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2. 7. 3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했고, 2022.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로 합계 8,600,69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협의 당시 C는 원고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협의로써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친의 사망 후 모친 앞으로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한 것으로 이 사건 협의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판사김소연

별지